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46

발의연월일: 2020. 12. 10.

발 의 자:이규민·고영인·김경만

김민철 · 김승원 · 문진석

박 정·신정훈·신현영

양정숙 • 위성곤 • 윤건영

이수진 • 이용선 • 이용우

이해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경우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이하 "등록료등"이라 함)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등록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등록료등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출원인에 포함시켜 등록료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출원인에게 반환해 주고 있으나 비밀 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해 주지 않아 수수료 간에 불합리함이 존재함.

이에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및 제87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디자인등 록출위에 관한 수수료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하 또는 포기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 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신 설>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 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 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 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③ (생략)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저

-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1. 2. (생략)
-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 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 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 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 략) 4. ~ 8. (생 략) ②·③ (생 략)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
<u> </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1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1.•2. (현행과 같음)
3
<u>디자인등록출</u>
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
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u>.</u>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